

문 의	특 허 청 산업재산활용과	과 장 김준경 사무관 김용혁	042-481-5258 042-481-5174
	서울회생법원 공 보 관 실	공보관	02-530-1605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1년 9월 10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9월 10일(금) 오전 10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	

특허청-서울회생법원,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특허청, 회생기업의 담보 지식재산권(IP)를 매입하여 **채무변제 자금**을 지원하고
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**통상실시권 및 재구매 우선권**도 부여 -

[사례]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A기업은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**법원 회생절차***를 신청하였으나, 경영 정상화를 위한 **회생계획 인가**를 받기 쉽지 않았다.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전제로 한 **채권자 동의**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.

하지만, 이번에 도입된 특허청의 **‘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 (Sales&License Back) 프로그램’**(이하 “SLB 프로그램”)을 통해, A기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여 **회생계획의 법원 인가**를 앞당김에 따라 **경영 정상화**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.

*** 회생절차** :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**기업의 구조조정 및 채무변제 절차**

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과 서울회생법원(법원장 서경환)은 9월 10일(금) 오전 10시, 서울회생법원(이하 “회생법원”)에서 『**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(IP)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**』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○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유*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았던 **회생기업****의 **담보IP**를 특허청으로 신속히 처분토록 하는 적극행정을 통해, 기업의 **경영 정상화**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* 회생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,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IP의 활용이 쉽지 않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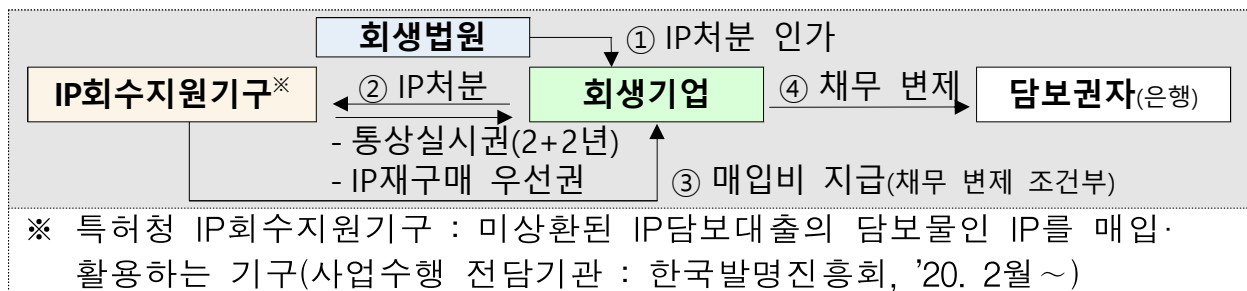
** IP담보대출 회생기업 현황 : (’20) 5개사 → (’21.上) 10개사

□ 이번 협력으로 마련된 회생기업 지원방안(SLB 프로그램)에 따르면, 회생법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IP 처분신청을 신속히 허가하고, 특허청은 이를 매입하여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게 된다.

○ 또한, 기업은 낮은 비용*으로 IP를 계속 사용하고, 재매입 우선권도 보장받아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* 기존 대출금리의 1/2에 관리비용을 더한 수준인 낮은 비용으로 특허실시 가능

<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'SLB 프로그램' 추진 절차 >



□ 과거 양 기관은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, 이번 협약 체결로 지원대상을 회생기업까지 확대하게 되었다.

* 양 기관은 '19년 6월 『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』을 체결

□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김용래 특허청장은 “회생법원과의 논의로 구체화된 이번 SLB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,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”면서,

○ “향후에도 혁신 중소·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,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활용과 김용혁 사무관(☎042-481-51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 배경

- 특허청은 상환되지 않는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IP를 매입하여,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IP담보 회수지원기구*를 출범('20. 2월~)

* 사업 전담기관 : 한국발명진흥회 / 전문기관 :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(주)

-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IP담보대출 기업의 회생개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, 특허청 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성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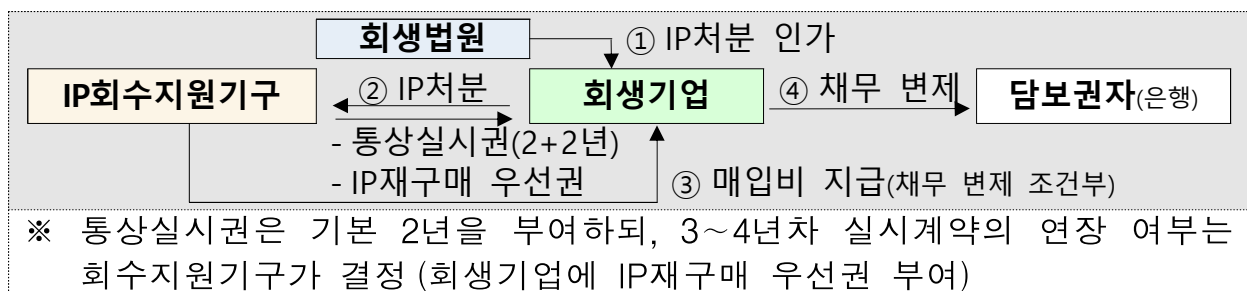
* 최근 IP담보대출 급증 추세를 고려시, 향후 회생기업도 지속 증가 예상

□ 추진 방안

- 회생기업 대상 SLB(Sales&License Back) 방식의 담보IP 처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,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

* 은행·기업간 합의를 통해 담보IP를 회수지원기구로 처분하는 경우, 기업에 통상실시권 및 IP재구매 우선권을 부여하여,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

<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'SLB 프로그램' 추진 절차 >



□ 기대 효과

- 기업은 최소한의 채무변제*를 통해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당길 수 있고, IP사용권**·재구매 우선권을 보장받아 사업 지속추진 가능

*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담보권자 3/4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며, 이를 위해 기업은 최소한의 채무변제가 필요

** 특허청은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, 낮은 실시료(기존 대출 금리의 1/2+관리비용 수준)로 IP사용권(통상실시권)을 최대 4년까지 부여



신청방법
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 기구
또는 IP담보대출 은행으로 신청

진행절차

담보 IP 매입신청(회수지원기구 또는 은행)

매입대상 확인 및 매입신청서 검토

실시료 산정 및 매매계약 체결

통상실시권 부여(최대 4년), 우선매수권 행사

MEMO

회생절차가 개시된 IP담보대출
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

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안내

Sales & License-back Program

문의처

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기구
(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금융센터)
☎ 02-3459-2938, 2936



특허청



서울회생법원



한국발명진흥회

개요

- 회생절차가 개시된 IP담보대출 기업의 담보특허를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기구(이하 본 기구)가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는 프로그램

대상기업 및 매입대상 특허

- 회생절차가 개시된 **IP담보대출*** 기업
* 본 기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취급된 IP담보대출에 한함
- 상기 IP담보대출의 **담보로 설정된 특허권**

매매대금

- IP담보대출 원금(잔액)의 **최대 50%***
* 매매대금은 인수자산 관련 담보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

임대료율(실시료율) 및 임대기간

- 임대료율은 기존 **은행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에 관리비용** 등을 반영하여 산출(시범사업 이후 변동가능)
- 임대기간은 **최대 4년**(기본 2년+추가 2년*)
* 추가 2년 연장 여부는 회수지원기구에서 결정

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장점

01

사업기반 유지



기업은 특허권을 매각한 뒤 재임대(통상실시권 부여)를 통해 권리침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02

신속한 회생 지원



매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활용함에 따라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등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.

03

저렴한 임대료(실시료)



기존 은행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춰 회생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.

04

우선매수권 부여



기업은 특허권 매각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특허권을 재매입할 수 있습니다.

FAQ

Q 신청을 하면 실제 IP매각 및 실시계약 체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A 통상적으로 매입절차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,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Q 모든 IP담보대출이 대상인가요?

A 본 기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취급된 IP담보대출의 담보IP를 대상으로 매입을 진행합니다.

※ 대상여부 확인 : 한국발명진흥회

(☎ 02-3459-2938, 2936)

Q 일반적인 경상실시료 요율과 비교하였을 때 실시료는 어떤 수준인가요?

A 민간 IP거래 시장의 평균 경상 실시료 요율 5.05%*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

* 「기술가치평가 실무 가이드라인」 '17.12.

Q 실시계약의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요?

A 최초 2년간 이후, 추가 2년에 대한 실시권 계약 연장 여부는 특허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수지원기구에서 결정합니다.

※ 또한, 최대 4년의 실시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업의 회생지원 및 특허권 재매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별도심사 이후 추가적인 실시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.

